제3조 (임대료 지급)

1. 을은 갑에게 남부 자카르타에 소재하는 점포의 임대료 금 일십오억 원정(₩1,500,000,000)을 지급해야 한다.

2. 위 금액은 갑의 브카시 치카랑에 소재하는 BCA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야 한다.